

충청북도청 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1997년 10월 24일

제 안 자 : 박만순의원외 5인

1. 수정이유

- 청풍장학회에 대한 도의 재산출연에 있어서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"보조 또는 출연"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에서 "보조"를 할 경우 장학회 운영이 방만해질 소지가 있으므로
- 제8조(재산출연)의 규정중 "보조 또는 출연"에 있어서 "보조"는 삭제하고 "출연" 만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이 추진되도록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제8조(재산출연)의 규정에 있어서 "보조 또는 출연"을 "출연"으로 함.

충청북도청 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청 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(재산출연) 중 “보조 또는 출연” 을 “출연” 으로 한다.